



보도시점 2026. 4. 13.(월) 11:00
4. 14.(화) 조간

배포 2026. 4. 13.(월) 09:00

농식품 스타트업기업 16개사, 틱스 R&D 별도 선정으로 최대 60억원 지원 받는다.

- 중기부 협업으로 농식품분야 16개사 별도 선발, 민간투자 유치기업에 최대 4년간 60억원 지원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손잡고 4월 14일(화)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틱스 R&D* 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중기부)

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중기부로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 여부 등을 확인해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주관) 중기부, (참여)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농식품부는 스케일업 틱스 15개소와 글로벌 틱스 1개소 총 16개소를 선정한다. 스케일업 틱스는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틱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4년간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일정 등은 농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농식품부) 시행계획 공고문(붙임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농식품부) 시행계획 공고문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은 (044-201-2451)
		담당자	사무관	황인준 (044-201-2455)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농식품부) 시행계획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216호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농식품부 시행계획 공고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정책지정형』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의 사항 -**

1.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력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분야 기업을 선별·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증 및 R&D를 지원합니다.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농식품부		
		신청·접수	과제 평가	과제 추천
스케일업 팁스	정책지정형	4.14.~4.30.	5월	5월
글로벌 팁스				

2.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6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산업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성장단계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을 촉진

□ 내역 사업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스케일업 팁스	성장단계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케일업을 촉진하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글로벌 팁스	글로벌 진출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2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정부출연금 51,000백만 원 이내, 16개 과제

(단위 : 개, 백만원)

내역 사업	지원규모(이내)		
	지원기간	과제 수	지원한도
스케일업 팁스	36개월	15	30억원
글로벌 팁스	48개월	1	60억원

- 공고 기간 : 2026. 3. 31.(화) ~ 4. 30.(목), 31일간

- 접수 기간 : 2026. 4. 14.(화) ~ 4. 30.(목) 16:00:00 까지

3

지원 대상

(1) 스케일업 팀스(정책지정형)

□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지원규모 : 15개 과제 내외*, 총 450억 이내

- 스케일업 15개 과제별 최대 36개월 30억원 이내

구분		1차년('26년)	2차년('27년)	3차년('28년)	4차년('29년)	계
스케일업	기간	6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36개월
	지원한도	5억원	8.3억원	10억원	6.7억원	3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농식품 연구개발(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가축질병 예방, 농생명자원 기반 신소재 등)

□ 지원조건 : 최대 36개월, 3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스케일업 팀스 (정책지정형)	최대 36개월, 3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부처 협업)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글로벌 팀스(정책지정형)

□ 지원대상

- 아래 2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국외 창업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경영권 관계, 연구성과물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적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검증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요건 ①) 민간투자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세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 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요건 ②)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단건) 유치

□ 지원규모

- 1개 과제, 최대 48개월 60억원 이내

구분		1차년('26년)	2차년('27년)	3차년('28년)	4차년('29년)	5차년('30년)	계
글로벌	기간	6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48개월
	지원한도	7.5억원	12.5억원	15억원	15억원	10억원	60억원

□ 지원분야

- 농식품 연구개발(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가축질병 예방, 농생명자원 기반 신소재 등)

□ **지원조건** : 최대 48개월, 6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 팀스 (정책지정형)	최대 4년, 6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부처 협업)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투자 인정 기준**

< 선투자 인정 기준 >

① **투자사 유형**

- 유망기업 지원이 가능한 투자재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 투자사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 | | |
|---------------------------|-------------|------------------|
| ① 벤처투자회사 |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③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 ④ 창업기획자 | ⑤ 외국투자회사* | ⑥ 금융투자업자 |
| ⑦ 기타(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 |

* 외국투자회사는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시근무)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② **투자금액**

내역사업		기업(본사) 소재지	인정 기준
스케일업 팀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억원 이상 투자(단건만 인정)
		비수도권 (수도권 외)	7억원 이상 투자(단건만 인정)
글로벌 팀스	요건 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5억원 이상 투자 (10억원 이상(단건) + 5억원(단건) 인정)
		비수도권 (수도권 외)	10억원 이상 투자(단건만 인정)
	요건 ②	지역 구분 없이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단건) 이상 투자유치 인정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 (단위) 민간투자사의 단독* 투자만 인정

* 단, 글로벌 팀스 사업은 최대 2건의 투자를 인정하되, 투자 간 시점 차이가 6개월 이내인 투자건만 누적으로 인정

③ **투자유형** :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신권발행(CB, BW)

4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및 유의사항은 [참고1] 참고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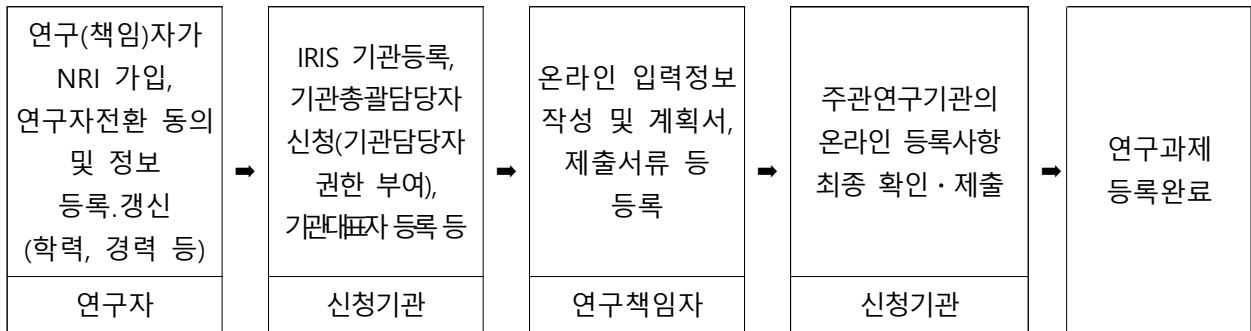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2026년 투·용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농식품부)' 검색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마감일의 16시(16:00:00)까지 접수 마감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본문2	○	
	* (본문1) 한글 20페이지 이내 권장	붙임1	○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붙임2	○	
	* (붙임1) 행정제재 이력 체크리스트	붙임3		○
	* (붙임2)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붙임4	○	
	* (붙임3)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붙임5		○
	* (붙임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5) 글로벌 진출 전략서(글로벌 팁스만 해당)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②	• 투자계약서, 민간투자사 자격에 관한 신고·등록 관련 문서	○		
③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글로벌 팀스만 해당)	○		
④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 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⑩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중기부)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⑪	*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1	○	
	*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2	○	
	* (별첨3)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별첨3		○
	* (별첨4)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별첨4		○
	* (별첨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5	○	
	* (별첨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별첨6	○	
	* (별첨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	별첨7	○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 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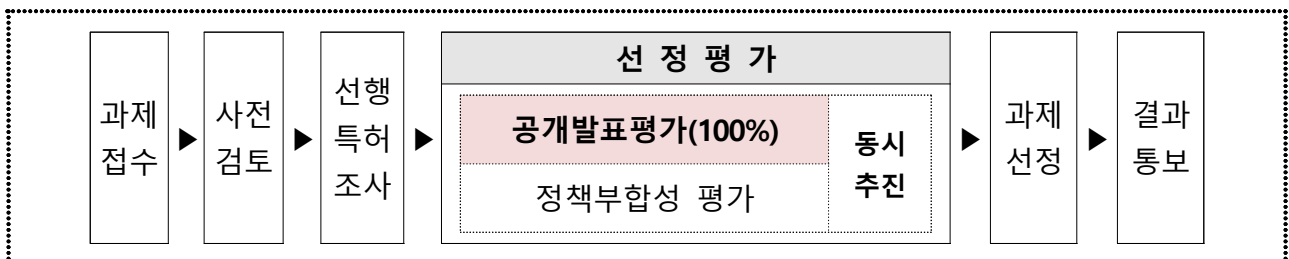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6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붙임 1) 참고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1)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 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 가점적용은 주관기관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기술료의 경우 농기평으로 공문으로 보고 및 IRIS에 등록된 성과만 인정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7 문익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평가 후 협약·집행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농생명사업실	061-338-97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 문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74, 7076, 7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붙임 1> 자유응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참고 1) 신청·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참고 2)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 문의처

(참고 3) NRI 연구자 전환 및 IRIS 접수 매뉴얼(별도 첨부)

※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문 참조